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김문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의원)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
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이 사업별·정책별로 산발적·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중시되며, 조기 발굴과 예방보다는 사후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나아가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중복 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유관기관 간 형식적인 협력체계, 학생 정보의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의 어려움, 지원의 단절, 학부모의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도움이 필요

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전문인력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상담, 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민감한 학생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단절 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는 학생 조기 발굴·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고민정 위원)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위기학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음을 고려할 때,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지원 조항 삭제는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백승아 위원)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방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위기학생 사례가 존재하며, 아동학대 신고에서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학생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함. 따라서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이 당장은 제외된 채로 법률안이 의결되더라도, 향후 정책 적용 경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안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임.